한국학술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2007년도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청요강(안)

2007. 9

한국학술진흥재단

주요사항 신구대비표

구분	2006년	2007년	비고
1. 지원예산	ㅇ **인문사회분야 9,100백만원** - 신규 : 2,023백만원 - 계속 : 7,077백만원	ㅇ **인문사회분야 9,100백만원** - 신규 : 2,662백만원(9과제) - 계속 : 6,438백만원(23과제)	
2. 지원분야	ㅇ 지정주제 분야 - 고등교육정책	ㅇ 자유주제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ㅇ 정책주제 분야 - 사교육 정책연구, 교육재정연구, 지방교육연구	
3. 지원규모 (년/과제당)	ㅇ **지정주제분야** - 연간 3억원 이내 + 추가 지원	ㅇ **자유주제분야** - 연간 2억 3천만원 이내 ㅇ **정책주제분야** - 연간 2억 3천만원	
4. 지원기간	ㅇ 3단계 9년(3+3+3)	ㅇ 좌동	
5. 신청자격	ㅇ 지정주제 관련 대학부설연구소	ㅇ 자유주제 : 대학부설연구소 ※대학별 1개 연구소로 한함 (정책주제 및 '00, '01선정 재진입 연구소는 산정하지 않음) ㅇ 정책주제 : 대학부설연구소 ※대학별 1개 연구소로 한함	
6. 심사절차	ㅇ **4단계심사** - 요건심사 - 전공심사 - 면담심사 - 종합심사	ㅇ **좌동**	
7. 최종연구 결과물 제출	ㅇ 세부과제별로 연차별 1편 이상	ㅇ 세부과제별로 연차별 1편 이상 ㅇ 정책주제분야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8. 사업 개시일	ㅇ 2006. 10. 16(지정주제)	ㅇ 2007. 12. 1	
9. 재진입	ㅇ 졸업연구소 신규 신청할 수 없음 (단,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소는 신청할 수 있음)	ㅇ 졸업연구소 2년 유예 후 신청가능 (단,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연구소는 유예 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차 례 -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Ⅱ. 사업내용 1
1. 지원분야 및 대상 1
2. 지원예산 2
3. 지원규모 2
4. 연구개시일 2

Ⅲ. 신청 2
1.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 3
2. 신청자격 4
3.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7
4. 신청기간 9
5. 신청방법 9
6. 신청절차 9
7. 신청서 주요 내용 11

Ⅳ. 심사 및 선정 12
1. 심사절차 12
2. 심사방법 및 내용 12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14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4
1. 연구비 지급 14
2. 연구비 관리 15

Ⅵ. 보고서 접수 및 평가 15
1.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및 연차점검(단계평가) 16
2. 결과보고 제출 및 평가 16

Ⅵ. 간접연구비 지원 18

※ 붙임 1 : 정책주제 분야별 연구제안서
붙임 2 :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붙임 3 : 신청양식(자유주제, 정책주제)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대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 지원강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소 중심의 젊은 연구자 양성 촉진
○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를 통한 연구소 연구역량의 국제화 도모
○ 대학연구소의 심층적 연구성과를 활용한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 및 심화
○ 대학연구소의 교육관련 주요 현안 및 중장기 주요 정책의 Think-Tank로의 역할 부여

2. 지원방향

○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T/O 의 안정적 지원으로 대학 연구소의 활성화
○ 대학별, 지역별 특성화 전략 확보 및 다학문간, 학제적 연구소 지원 강화
○ 연구소의 연구와 교육 기능 및 역할 제고
○ 연구소장 중심의 자율 책임경영(권) 강화
○ 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따른 정책주제 연구소 지원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1) 자유주제 : 인문사회 전 분야
2) 정책주제 : 사교육 정책연구, 교육재정 연구, 지방교육 연구

나. 지원대상

○ 대학에서 구체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된 대학부설연구소
- 대학에서 연구소 전임연구인력을 확보(계획포함)하고 있는 연구소
- 대학에서 독립된 전용공간과 연구공간을 지원(예정포함)하고 있는 연구소

※ 대학은 해당 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대응투자, 연구시설, 인력 지원

등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지원형태 : 공동연구

2. 지원예산(신규지원비)

○ 인문사회분야 : 2,662백만원

- 자유주제 : 1,822백만원(6개 연구소 내외)
- 정책주제 : 840백만원(3개 연구소 이내)

※ 신청내용이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예산이 남더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규모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자유주제 분야	연 2억 3천만원 이내	3단계 9년(3+3+3)
정책주제 분야	연 2억 3천만원	

※ 단계별 신청 및 단계(연차)평가를 통한 지원 실시

4. 연구개시일 : 12월 1일

Ⅲ. 신청

1.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

가. 자유주제 : 대학별 1개 연구소

나. 정책주제 : 대학별 1개 연구소(정책주제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 졸업한 연구소 중 우수성과 연구소는 대학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신청자격

가. 대상연구소 요건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분야 및 정책주제 관련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

- 전임연구인력에 대한 지위향상 및 신분안정을 위한 인사정책 확보
- 대학 당국의 연구소 육성의지가 확고하고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나. 참여인력 자격 요건

1) 자유주제

가) 연구업적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A&HCI급·SSCI급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업적 요건 대상에서 제외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상기 국제학술지(A&HCI·SSCI급)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연구지원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나) 참여 신분별 참여자격

구 분		참여자격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연구업적 3편 이상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연구업적 3편 이상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2) 정책주제

가) 연구업적 : 제한 없음

나) 참여 신분별 참여자격

구 분		참여자격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연구업적 제한 없음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연구원	연구업적 제한 없음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생

3) 공통사항

가) 전임연구인력은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업(Full-Time)으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나) 전임연구인력은 신청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자에 한함(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발령)

- 전임연구인력 중 타 대학 박사학위 출신자가 25% 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신청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 당시 자격을 연구 종료시까지 인정함(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시에도 보조원 인정)

다. 연구소 공간, 전임 인력 인건비, 대응투자 요건

구 분	기 준	비 고
시설(공간)	연구소 전용공간 : 49.5㎡ 이상 전임연구인력 : 1인당 4.9㎡ 이상	
전임연구인력	연 2,700만원 이상 지급	제 복리후생비 별도
대응투자	자유주제 : 지원 연구비의 15% 이상 확보	
	정책주제 : 대응자금 확보 의무 없음	

라. 연구팀 구성 및 조건

1) 자유주제

○ 연구소 총괄과제별 2개 이상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1개의 세부과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야 함

구성		자 격	비고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세부과제 책임자 겸임 가능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나. 참여인력자격조건, 1), 가)항의 연구업적	-
공동 연구원	일반	나. 참여인력자격조건, 1), 가)항의 연구업적	총 3명 이상 연구소 전임연구인력이 세부책임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은 그 전임연구인력 2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가능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이상)	
연구보조원		학사·석사·박사 과정생	세부과제별 3명 이상

2) 정책주제

○ 연구소 총괄과제별 2개 이상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1개의 세부과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야 함

구 분		자 격	비 고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세부과제 책임자 겸임 가능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연구업적 제한 없음	세부과제별 1명
공동 연구원	일반	연구업적 제한 없음	1명 이상[1)]
	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연구보조원		학사·석사·박사 과정생	3명 내외

[1)] 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연구소 대학 외 각기 다른 대학 소속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와 일반 공동연구원의 경우 연구업적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평가시 우대함

마. 연구소 운영 요건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나) 운영위 구성 :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일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이 구성함

※ 연구소에 기존 운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주제로 선정되는 중점연구소는 운영위원회 구성시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함

다) 운영위 기능 :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선정 후 연구소 실행예산 편성, 연구계획 변경 등)

2) 연구소장은 임기제로 선임하며(연임가능), 연구기간 중 적절한 사유(대학 내 규정, 해외연수, 파견, 휴직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없이 변경할 경우 연차점검 및 단계 평가시 이를 반영하며, 연구기간 중에는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도록 함

※ 연구소장은 총괄책임자가 되어 연구소 기반조성, 인력육성 및 연구과제 진행을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할 수(1과제에 한함) 있음

3) 연구소(총괄과제)당 1인 이상의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연구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함

4) 연구소 지원신청시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전임연구인력 등은 지원 대상 연구소 선정 이후 확보 가능하나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 확보를 원칙으로 함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 해당 대학교원 또는 연구소의 전임 연구인력

※ 일반 공동연구원 :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 (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5) 전임연구인력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6) ***정책주제의 경우 지원 분야별 연구제안서(붙임 1 참조)에 명시된 운영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원 분야별 관계기관 담당자(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을 초청하여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하여야 함***

바. 우수성과 중점연구소 신청

○ 2006년 졸업(2000년도 선정), 2007년 졸업(2001년도 선정)한 중점연구소 중 우수성과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대학부설연구소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3.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제한

1) 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소 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소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평가(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탈락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 *중점연구소를 졸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부설연구소*

○ *2007년도 인문학진흥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에 연구소 및 연구단의 주관 연구소로 신청 및 참여하는 대학부설연구소(연구단의 참여 연구소는 신청할 수 있음). 단, 연구단의 참여 연구소로 신청한 대학부설연구소는 두 사업 모두 선정시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해야 함*

2) 연구진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나. 연구 참여제한

○ 본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인건비성 경비(박사급연구원 포함)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만료일이 2008. 1. 1. 이후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과제, 우수논문사후지원과제, 국가석학지원(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과제, 학술성과확산지원의 WISE 프로그램 지원과제, 박사논문출판지원과제(인문학분야)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만료일이 2008.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연구인력방문사업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BK21 및 NURI사업 제외)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기간에 저촉되는 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4. 신청 기간

○ **총괄 및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2007.10.22(월) ~ 2007.10.25(목) 18:00*

※ 접수기한 준수, 신청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함

5. 신청 방법

○ 연구소 및 연구책임자 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

○ 연구소 접속 및 신청

- 연구소 단위로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접속방법 추후 안내)에 접속하여, 연구참여자(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정보 및 총괄신청서 탑재

○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접속 및 신청

- 재단 홈페이지 → 연구책임자 로그인 → 연구지원 Menu → 연구지원 신청 → 해당사업 클릭 진행
- 세부과제별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탑재

※ 상세내용 : 추후 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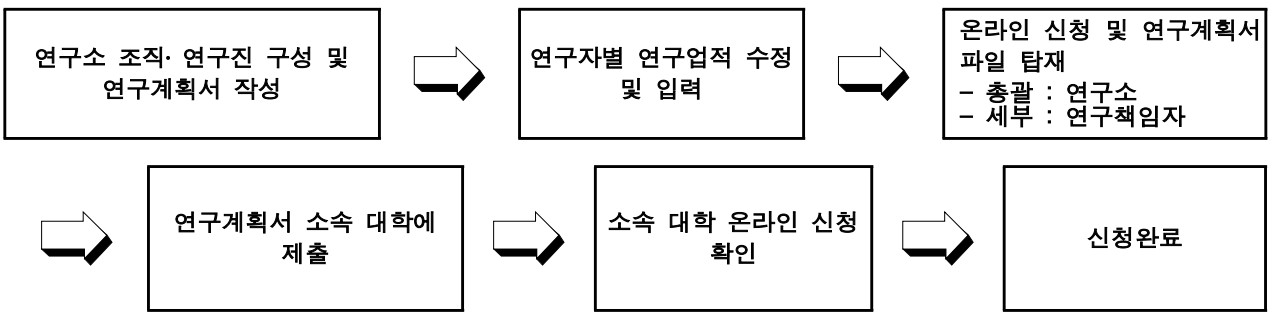

6.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소 정보 입력

- 총괄책임자(연구소장)은 온라인 신청전 재단 「대학부설연구소정보」에 해당 연구소의 정보를 입력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함

○ 참여 연구자 정보 입력

- 신청연구소 소속 연구자는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 등록」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뒤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 연구계획 수립시 연구기기 구입이 필요 할 경우 사전에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서 동일 또는 동종 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총괄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 온라인 신청시 흔글 또는 MS 워드로 작성한 총괄 및 세부 연구계획서 온라인 탑재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기간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입력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온라인 신청이 완료된 과제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원활한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

다. 온라인 신청 후

○ 총괄 및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

- 입력내용(총괄 및 세부과제 연구계획서 포함)을 출력하여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정해진 기간 내 소속 연구자들의 온라인 신청 여부를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함(기관승인)
- 기간 내 확인이 안 된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신청현황 등 관련 내용을 보관하여야 함
- 확인 기간 : ***2007. 10. 26 (금) 18:00까지***

○ 인건비를 신청한 박사급 연구전임인력에 한해서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에 대한 기관부담금은 연구비 중 인건비 항목에 산정하되 사전 연구책임자와 신청 기관장과의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의 확인사항을 기준으로 지원함

7. 신청서 주요내용

※ 상세내역은 신청서 양식 참조

가.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구소 활동 목표(중장기 발전 계획) 제시

· 중점연구소사업 신청 시 소속대학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연구소의 활동(연구 및 인력육성) 목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 심사항목에 해당하며, 연차점검 및 단계별 평가에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임

1)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

가) 연구소 현황 및 실적

나) 연구소 운영 및 발전계획

- 연구소 내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
-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
- 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 계획

다) 대학 측의 지원 (인력, 대응투자, 시설 확충) 계획

- 대응투자 계획
-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확보 계획
-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계획

2) 연구소 활동 목표 (연차별 목표)

가) 전임연구인력 확보 : 중점연구소 사업 현재 연구소 소속의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목표 및 그 방안

나) 교육 부문 : 중점연구소 내에 강좌 및 대학원학위 과정의 개설 목표, 교육과 연구의 연계 활동,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등

다) 연구 부문 : 과제 수행 중에 달성 가능한 참여인력의 연구 성과 목표

- 전임연구인력 및 연구소 비전임 연구인력(대학교원)으로 나누어 기술
-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 수 또는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작품전 입상 등

- 국제특허 등 기타 주요 관련지표

라) 기타 부문 : 그 외 연구소 활동의 성과 목표

나. 중장기 연구 계획서 작성

○ 연구과제의 추진 전략, 추진체계, 연구수행 일정, 예상 성과 등

○ ***정책주제의 경우에는 지원 분야별 연구제안서(붙임 1 참조)에 명시된 주요과제 수행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재단
2단계	전공심사	패널심사	연구소 실적 및 육성계획 인력양성등 수행목표의 적절성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단계		면담심사	전공심사에서의 미확인 또는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의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 협력 사항 등	면담심사단
4단계	종합심사		최종 선정기준 확정	종합심사위원회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2단계 심사 : 패널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계획서 서면평가

- 연구소 실적 및 현황, 연구소 육성 및 운영 계획, 연구소 성과목표, 예

산집행 계획 등

○ 연구계획서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연구소 실적 및 현황	· 전문화/특성화 실적 - 연구소 설립목적,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실적, 연구수행성과(연구비 수주 포함), 특화분야 중장기 기획연구 수행실적 간의 연관성 등 · 연구참여자 현황 및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능력) ·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또는 연구문헌) 보유 현황	30
연구소 육성 및 운영 계획	· 연구소 운영, 발전계획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 연구소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계획 · 연구소장의 행정·연구능력 및 연구소 발전에 대한 의지(향후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대학 측의 인력, 대응투자, 시설 확충계획 · 대학차원의 지원 및 육성 계획 · 산·학·연 협력 계획	30
연구소 성과목표	· 교육과 연구의 연계 목표 - 교육과 연구의 연계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 · 연구 성과 목표 - 전임연구인력/비전임인력(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 · 기타 성과목표 - 기타 성과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달성가능성이 높은가?	20
연구과제 수행계획	·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주제의 창의성·구체성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주제간, 세부과제 내의 주제간 연계성 · 연구내용, 방법의 적합성 및 논리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5
예산집행 계획	· 예산 편성내용이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5
계		100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책주제 분야는 지원 분야별 연구제안서와의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에 반영함

다. 3단계 심사 : 면담심사

○ 심사주관 : 면담심사단

※ 전공심사단과 동일하되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추가 활용

○ 심사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 심사내용
- 전공심사에서의 미확인 또는 의문사항 확인
- 연구진의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 협력 사항 등

라. 4단계 심사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 전공 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3.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가. 예비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다. 협약체결 : 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라. 선정 확정 후 이행 여부 조사

○ 필요한 경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현장실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이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지원 연구소 선정 확정 후 1년 단위로 지급

○ 1년 단위 연차별 점검 및 3년 단위 단계별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조정 연구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보고서 접수 및 평가

1. 연차(단계)보고서 제출 및 연차점검(단계평가)

가. 연차보고서

1)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단계보고서 제출 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함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3)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나. 단계보고서

1) 제출시기 :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3) 제출자료 : 단계 결과보고서 및 연구계획서(재단 소정양식)
- 현 단계 결과보고서
- 다음 단계 연구비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다. 점검 및 평가 결과

1) 결과 적용 : 차년도(다음 단계)의 계속지원여부 결정 및 연구비 조정

2)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평가(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탈락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은 향후 2년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에 신청을 제한함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3) 제출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
- 연구요약문(국·영문)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파일 탑재

- 자유주제 : 연구결과 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정책주제 : 정책보고서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나.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1)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가) 자유주제

○ 연구결과 발표물은 세부과제(연구팀) 단위로 연차별 1편 이상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급·SSCI급)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

나) 정책주제

○ 연차별 1편 이상 정책보고서 발표

※ 정책주제 지원분야별 관계부처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정책보고서는 차후 재단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함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가) 자유주제 : 연구기간(단계, 3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정책주제 : 연차별 1편 이상 정책보고서 발표

3)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7-○○○-○○○○○○○).”

4) 연구결과 발표물(게재논문 또는 저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다.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당해 연구자에게 속함

○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특허·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관련 조항을 준용함

○ 재단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재단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Ⅵ.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 연구소 소속 대학교

2. 지원기준 : 2007년도 간접비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

3.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 시 일괄 지급

[붙임 1]

사교육 정책연구 연구제안서

Ⅰ. 사업 개요

가. 정책 주제명 : 사교육 정책 및 교육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나. 사업 목적

○ 정기적·상시적 연구체제 확립으로 과학적 사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 조성

- 사교육 관련 분야별 각종 정책 자료 및 통계 축적
- 현안별 이슈·포지션 페이퍼, 연간 지정과제 보고서 등 발간·보고

○ 사교육 관련 전문 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 저변 확대

다. 지도·감독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사교육대책추진팀

Ⅱ. 운영계획(안)

가. 연구팀 구성 및 조건

○ 정책주제 중점연구소 연구팀 구성 및 조건을 따름

나. 연구소 운영사항

○ 중점연구소 선정시의 연구소장이 지원 종료일까지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소장 변경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 변경 시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

○ 연구진은 교육학, 경제학, 통계학, 사회(심리)학 전공자 위주로 선정

○ 사교육 정책 연구의 효율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담당자와 정기·수시 협의회 개최

※ 관계 담당자 :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공무원, 시도교육청 사교육 담당자 등

○ 연구의 성격에 따라 대학 외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

구원과 공동연구 실시

○ 연구소 소속 교수, 직원, 연구원 이외에는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료 공유 및 유출 등 금지

※ 연구소 지정 해제 후 5년간 외부 공개 금지

Ⅲ. 주요과제(2007~2009)

구분	과 제 명	비 고
2007년	○ '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분석연구 ○ 사교육 수요·공급 종합 연구 ○ 사교육 정책과 교육지표간의 관계 분석 ○ 종단연구 : 사교육/비사교육 집단 비교 연구 ○ 수시과제 정책연구 2건 ○ 현안 이슈페이퍼 5건 ○ 사교육 토론회 및 포럼 운영 5건 ○ 기고, 정책자문, 각종 협의회	
2008년	○ '08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분석연구 ○ 사교육 수요·공급 종합 연구 ○ 사교육 정책과 교육지표간의 관계 분석 ○ 종단연구 : 사교육/비사교육 집단 비교 연구 ○ 수시과제 정책연구 2건 ○ 현안 이슈페이퍼 5건 ○ 사교육 토론회 및 포럼 운영 5건 ○ 기고, 정책자문, 각종 협의회	
2009년	○ '08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분석연구 ○ 사교육 수요·공급 종합 연구 ○ 사교육 정책과 교육지표간의 관계 분석 ○ 종단연구 : 사교육/비사교육 집단 비교 연구 ○ 수시과제 정책연구 2건 ○ 현안 이슈페이퍼 5건 ○ 사교육 토론회 및 포럼 운영 5건 ○ 기고, 정책자문, 각종 협의회	

※ 사교육정책과 교육지표간의 관계 분석연구 : 매년 초 교육부에서 과제 지정

교육재정연구 연구제안서

Ⅰ. 사업 개요

가. 정책 주제명 : 교육재정연구

나. 사업 목적

○ 초중등 및 고등분야 교육재정의 브레인 역할 수행

- 현안별 이슈·포지션페이퍼, 연간 지정과제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교육부와 교육재정연구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주제별 정책 자료 축적 및 해당분야 전문가 양성

- 학계·관계의 교육재정전문가 그룹 양성 및 학문적 외연 확대

다. 지도·감독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Ⅱ. 운영계획(안)

가. 연구팀 구성 및 조건

○ 정책주제 중점연구소 연구팀 구성 및 조건을 따름

나. 연구소 운영사항

○ 중점연구소 선정시의 연구소장이 지원 종료일까지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소장 변경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 변경 시 교육부 담당부서와 협의

○ 연구진은 (교육)재정, 회계학, 통계학, 도시계획 전공자 위주로 선정

○ 교육재정 연구의 효율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담당자와 정기·수시 협의회 개최

※ 관계 담당자 :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공무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재정예산담당자

○ 연구의 성격에 따라 대학 외 한국교육재정학회, EDUMAC,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회계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 실시

○ 연구소 소속 교수, 직원, 연구원 이외에는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료 공유 및 유출 등 금지

※ 연구소 지정 해제 후 5년간 외부 공개 금지

Ⅲ. 주요과제(2007~2009)

구분	과 제 명	비 고
2007년	○ 교육재정포럼 연2회 ○ 미국 주정부 교육예산 구조(단행본) ○ 학교설립에관한 국제 비교(단행본) ○ 지방교육재정구조개선방안(단행본) ○ 시·도 교육청 재정·예산분석 연구서 ○ 교육부 지정 2개 대학교 재정·예산분석 연구서 ○ 교육재정성과지표 연구서 ○ 교육부가 요청하는 이슈·사안별 보고서 5건 이상 ○ 교육재정 논문연구비 지원	
2008년	○ 교육재정포럼 연1회 ○ 국제교육재정컨퍼런스 개최 1회 ○ 영국 대학 교육재정 배분 구조(단행본) ○ 국제교육재정컨퍼런스논문정리 ○ 교육부 지정 2개 대학교 재정·예산분석 연구서 ○ 교육부가 요청하는 이슈·사안별 보고서 2건 이상 ○ 교육재정 논문연구비 지원	
2009년	○ 교육재정포럼 연2회 ○ 일본 주정부 교육예산 구조(단행본) ○ 단위학교 예산회계 해외사례(단행본) ○ 지방교육재정구조개선방안(단행본) ○ 시·도 교육청 재정·예산분석 연구서 ○ 교육부 지정 2개 대학교 재정·예산분석 연구서 ○ 교육기관 복식부기 회계 성과 연구서 ○ 교육부가 요청하는 이슈·사안별 보고서 5건 이상 ○ 교육재정 논문연구비 지원	

지방교육연구소 연구제안서

Ⅰ. 사업 개요

가. 정책 주제명 :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나. 사업 목적

○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각종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대응방안 및 발전방안 모색

○ 교육의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 추진

○ 서비스 중심의 교육행정기관 역할 모델에 대한 연구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사,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발 및 개선 연구

다. 지도·감독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혁신과

Ⅱ. 운영계획(안)

가. 연구팀 구성 및 조건

○ 정책주제 중점연구소 연구팀 구성 및 조건을 따름

나. 연구소 운영사항

○ 중점연구소 선정시의 연구소장이 지원 종료일까지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소장 변경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 변경 시 교육부 담당 부서와 협의

○ 지방교육 연구의 효율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담당자와 정기·수시 협의회 개최

※ 관계 담당자 :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공무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 연구의 성격에 따라 대학 외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

연구원과 공동연구 실시

○ 각종 자료의 공유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독자적인 지방교육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 매년 지방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행하고 지방교육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

○ 연구소 소속 교수, 직원, 연구원 이외에는 교육부와 협의 없이 자료 공유 및 유출 등 금지

※ 연구소 지정 해제 후 5년간 외부 공개 금지

Ⅲ. 주요과제(2007~2009)

구분	과 제 명	비 고
2007년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지방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 교육의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 수립 연구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수시 현안 정책연구 3건 ○ 수시 현안 쟁점 검토보고 4건 ○ 학술회의(공청회) 개최	
2008년	○ 지정 연구과제 Ⅰ ○ 지정 연구과제 Ⅱ ○ 지정 연구과제 Ⅲ ○ 수시 현안정책연구 3건 ○ 수시현안쟁점 검토보고 4건 ○ 학술회의(공청회) 개최	
2009년	○ 지정 연구과제 Ⅰ ○ 지정 연구과제 Ⅱ ○ 지정 연구과제 Ⅲ ○ 수시 현안정책연구 3건 ○ 수시현안쟁점 검토보고 4건 ○ 학술회의(공청회) 개최	

[붙임 2]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항목만 유지
	·외부인건비 -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 * 교육인적자원부, 재단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보험료(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박사급연구원 : 월 160만원 이내 / 1인당 -전임연구인력 : 연2,700만원 / 1인당 * 4대보험 : 전임연구인력 수당의 9%로 산정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여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 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 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조사연구비 현지 조사 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 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300만원이내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간접비	**·간접경비** 중앙관리 경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기타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산학협력단회계 혹은 교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함.
	·연구개발준비금	-항목만 유지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항목만 유지
	·연구실 안전관리비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 외부기관 용역비	-항목만 유지

※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신청할 것 (단, 본 사업이외의 재단 여타사업의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수당 혹은 연구활동비 중 하나를 계상할 수 있음)

※ 여비의 산정은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

※ BK21 또는 NURI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신분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에의 연구보조원 참여 및 수당 수혜가 가능함(단, 학술연구조성사업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하여야 함)

※ 4대보험료는 전임연구인력 수당의 9%로 산정하고, 잔액발생시 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박사급 연구원 수당은 해당사항 없음)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연구비 신청시에 특정 세부항목(“연구참여 수당” 제외)이 전체 연구비의 70% 초과시는 사유서 제출

※ 문헌구입비는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에서 신청

[붙임 3]

2007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자유주제 총괄 신청서

<table>
<tr><th colspan="6">연구소 정보</th></tr>
<tr><td>연구소명</td><td colspan="5">※ 대학명을 제외한 연구소명만 기재</td></tr>
<tr><td>연구분야</td><td>대분류[1)]</td><td></td><td colspan="2">소분류[2)]</td><td>※ 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참조</td></tr>
<tr><td rowspan="4">연구과제명</td><td>총괄과제명</td><td colspan="4">국문 :
영문 :</td></tr>
<tr><td rowspan="3">세부과제명</td><td>제 O 세부과제</td><td colspan="3"></td></tr>
<tr><td>제 O 세부과제</td><td colspan="3"></td></tr>
<tr><td>·
·</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연구규모
(연구소 총괄)
연구규모</td><td colspan="2" rowspan="3">1단계 신청연구비</td><td>1차 년도</td><td colspan="2">천원</td></tr>
<tr><td>2차 년도</td><td colspan="2">천원</td></tr>
<tr><td>3차 년도</td><td colspan="2">천원</td></tr>
<tr><td colspan="2" rowspan="4">참여인원</td><td>총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td><td colspan="2">명</td></tr>
<tr><td>일반 공동연구원</td><td colspan="2">명</td></tr>
<tr><td>전임연구인력</td><td colspan="2">명</td></tr>
<tr><td>연구보조원</td><td colspan="2">명</td></tr>
<tr><td colspan="2">세부과제(연구팀) 수</td><td colspan="3">총 과제</td></tr>
</table>

1) 인문/사회/예체능/복합학 중 택일

2) 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참조(http://www.krf.or.kr/KHPapp/database/database_02_02.jsp?sub=menu_02)

☐ **작성요령** (신청서 작성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영역 : 연구소 총괄사항에 대하여 아래 영역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소 실적 및 현황**
- **연구소 중장기 발전 계획**
- **1단계 연구소 성과목표**
- **1단계 총괄 연구개요**

○ 분량 : 총 30매(상기 4가지 영역 전체포함) 이내
○ 형식 :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
○ 규격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참고사항 : 총괄 계획서는 온라인 신청 후 별도의 기관장 확인양식(추후 배포예정)에 동일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연구소 실적 및 현황

Ⅰ. 연구소 설립목적 및 연구실적

1. 연구소 설립 근거, 배경, 연도 및 목적

※ 학칙 또는 연구소 규정에 기술된 내용을 작성

2.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가. 소속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방향

※ 기 확정된 내용을 작성

나. 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안에 한하여 작성

3. 연구소 실적(기간 : 2004. 1. 1 ~ 2007. 6. 30)

☞ **연구소 전문화/특성화와 연계된 실적에 한하여 작성**

가. 연구비 확보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 실적 개요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계
건 수	건	건	건	건	건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연구소명으로 계약되어 수행한 연구실적만 기재하십시오.(연구소 소속 교원 개인이 수행한 실적은 제외)

○ 실적 세부내역

(금액단위:천원)

번호	연구기간	연 구 과 제 (지원사업명)	참여 인원수	지원연구비	연구비 지원기관명
1 2 3					

○ 대표 연구성과 및 활용도 기술

(위의 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 성과 10여개 이내 기술)

나. 학술회의 개최실적

(2004. 1. 1 ~ 2007. 6. 30 사이에 연구소에서 주최/주관한 학술회의 실적)

○ 국내 학술회의(세미나 포함)

번호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자수
1 2 3				

○ 국제 학술회의

번호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자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2 3						

다. 정기간행물/단행본 발간실적

(2002. 1. 1 - 2007. 6. 30사이에 연구소에서 발간한 실적)

학술지 / 학술서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부	
	부	
	부	
	부	

※ '발행일자'에 정기 발행본은 발행주기 기재

Ⅱ. 연구소 현황

1. 연구인력 현황

※ 연구소 full-time으로 상근하는 연구인력(전임연구인력 등)에 한하여 작성

※ 학위취득 현황, 최근 연구수행실적, 고용조건(형태, 보수 등) 및 기타

2. 연구소 시설(공간) 및 연구장비 등 보유현황

※ 시설은 연구소의 위치, 별도 건물여부 등 상세히 작성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Ⅰ. 연구활동 부문

※ 향후 3단계 9년간(또는 이후 포함)의 연구소 발전계획을 아래 항목에 맞추어 기술

1. 중장기 연구목표

*** 이하 단계별로 구분, 개략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 중장기 연구계획 요약

*** 재단 지원과제와 연구소 고유의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

- ○ 중점연구소지원과제
- ○ 연구소 자체 추진 연구과제

3. 기타사항

Ⅱ. 연구소 운영 부문

※ 향후 9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 기술하되 1단계 3년간의 내용은 연차별로 제시

1. 연구소의 운영 및 발전 계획

- ○ 연구소 소속대학의 전문화 / 특성화 방향
- ○ 연구소의 전문화 / 특성화를 위한 계획
- ○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

2. 전임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 계획

- ○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대우, 향후 활용 계획

○ 연구소 육성/발전정책과의 연계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

3.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 연구소 내 강좌개설(학점인정여부) 또는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4. 대학측의 지원(대응투자, 인력, 시설 확충) 계획

가. 대학측의 대응자금 투자

(금액단위:천원)

구 분		단계별 지원계획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재단 신청액								
대학측의 지원	대응투자							
	대응투자비율 (대응투자/신청액 %)							
총 계								

※ *대응투자, 과제참여 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소운영인력 항목은 향후 지원결정시 협약서상 반드시 지켜야 할 이행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응투자비율'은 이공계 분야의 경우, 5억원 이내 금액(기자재 등 별도 신청금액 제외)에 대한 비율을 작성하십시오*

○ 대응자금 집행 계획

※ 재단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에 의거 작성

나. 대학 측의 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지원

구 분		단계별 지원계획 (인원)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전임연구교수	인원							
	보수수준							
전임연구원	인원							
	보수수준							
계	인원							
	보수수준							

※ '보수수준'은 연봉을 기준으로 작성

※ 동 사업 선정을 통하여 확보, 임용되는 전임연구인력 외 대학측 인력지원에 한하여 작성

다. 연구소 운영인력 지원

구 분		단계별 지원계획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행정지원인력	인원							
	보수수준							
기타 (기술지원인력)	인원							
	보수수준							
계	인원							
	보수수준							

라. 연구소 시설 확보 계획

용 도	현 재	추가확보 계획	계	비 고
연구소 전용공간	㎡	㎡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	㎡	㎡	
총 계	㎡	㎡	㎡	

※ '연구소 전용공간'은 전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십시오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은 전임연구인력에게 별도로 확보된 전용공간임(1인당 1.5평 이상)

5. 기타사항

1단계 연구소 성과 목표

Ⅰ. 연구소 현황 및 실적

■ 연구소 사업 목표

1. 교육과 연구의 연계

중점연구소 내에 강좌 및 대학원 학위 과정의 개설 목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목표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목표

2. 연구 성과

과제 수행 중에 달성 가능한 연구성과 목표

(전임연구인력 및 연구소 비전임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①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수 또는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

② 국제특허 등 관련 기타 주요 관련지표

※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 또는 학술저서, 공인된 국제 작품전 등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3. 인력양성 부문

중점연구소 소속의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및 양성목표

4. 기타사항

■ 연구소 사업목표

※ 과제 수행 결과 달성할 수 있거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목표들을 제시함
※ 서식이 주어진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표를 기술함

1. 교육과 연구의 연계 부문

(단위: 건수)

항 목	현재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강좌개설(학점인정)					
강좌개설(학점불인정)					
학위과정개설(대학)					
기타 1					
기타 2					
기타 3					
계					

※ '현재'는 연구소지원사업 신청 당시 실시중인 강좌
※ 강좌개설(학점불인정)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 강좌, 교양 강좌 또는 연수 강좌 등을 포함하며 연 6 회 이상의 실시되는 강좌
※ 기타에는 그 외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기술하고 목표치 기재

□ 각 항목의 구체적 운영 계획 기술

○

-

2. 연구 성과

1)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연구 성과 : 과제참여인력에 한함

항 목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①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수(학술저서 포함)/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				편
② SCI급외 논문수				편
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⑤ 국제특허(등록)				건
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 금액 및 기타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 ①란에는 SCI급 국제학술지/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수,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작품전 입상 건수 만을 기재하되, 이와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연구목표는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2) 연구소 비 전임연구인력(대학교원) 성과 : 과제참여인력에 한함

항 목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①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수(학술저서 포함)/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				편
② SCI급외 논문수				편
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⑤ 국제특허(등록)				건
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 금액 및 기타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3. 인력양성

(단위: 명)

항 목	현재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전임연구인력(재단)					
전임연구인력(대학)					
전임연구인력(기타)					
계					

※ 현재는 연구소지원사업신청 당시 확보된 전임인력 숫자
※ 전임연구인력의 ( )안 표시는 인건비 지급 근거 재원을 의미함 - '기타'는 과기부 등의 정부 타 부처의 인력지원 사업에 의한 숫자

□ 확보 및 활용 방안 기술

○

-

4. 기타 주요 목표

※ 그 외, 주요 목표가 있으면 현재 대비 단계별 목표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주십시오

항 목	현 재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계

1단계 총괄 연구개요

※ 제 1단계 3년간의 연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2매 이내로 작성

Ⅰ. 연구소 총괄 연구개요

1. 연구요약

* 연구소 총괄 연구계획의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2. 세부과제별 구성

* 총괄 주제와 세부과제간 연계성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 과제번호	

2007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자유주제 제( )세부과제 연구계획서

연구분야	※ 재단 학문분야 분류표상의 소분류 단위		
연구규모	1단계 신청연구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참여인원	총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명
		일반 공동연구원	명
		전임연구인력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작성요령** (신청서 작성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 : 세부과제별로 작성
- ○ 분량 :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20매 이내(연구업적요약문 제외)
- ○ 형식 :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
- ○ 규격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

Ⅰ. 연구 계획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연구소 총괄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1단계(3년)의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하여 주십시오.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참고문헌

Ⅱ. 연구 수행계획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2. 연구수행일정

(1단계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 년도 과제 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 2차, 3차 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

☞ 향후 연구수행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 실질적인 역할 분담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공동 연구원	일반 공동	갑		
		을		
		병...		
	연구 전임 인력	갑		
		을		
		병...		

4. 연구비 규모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Ⅲ. 대표업적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요약문 번호	

※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 구 업 적 요 약 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업적 참여형태 (논문작성시 참여형태)	책임 또는 단독( ), 공동( )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요약문 번호 명기 방법 (연구업적별 작성)

예) 연구책임자: 책임-1, 책임-2.

공동연구자: 갑-1, 갑-2 / 을-1, 을-2 /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2007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정책주제 총괄 신청서

<table>
<tr><th colspan="6">연구소 정보</th></tr>
<tr><td colspan="2">연구소명</td><td colspan="4">※ 대학명을 제외한 연구소명만 기재</td></tr>
<tr><td colspan="2">정책주제분야</td><td colspan="4">※ 사교육 정책, 교육재정, 지방교육 중 택 1</td></tr>
<tr><td colspan="2" rowspan="4">연구과제명</td><td>총괄과제명</td><td colspan="3">국문 :</td></tr>
<tr><td rowspan="3">세부과제명</td><td>제 O 세부과제</td><td colspan="3"></td></tr>
<tr><td>제 O 세부과제</td><td colspan="3"></td></tr>
<tr><td>·
·</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6">연구규모
(연구소 총괄)
연구규모</td><td colspan="2" rowspan="3">1단계 신청연구비</td><td>1차 년도</td><td>천원</td></tr>
<tr><td>2차 년도</td><td>천원</td></tr>
<tr><td>3차 년도</td><td>천원</td></tr>
<tr><td colspan="2" rowspan="4">참여인원</td><td>총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td><td>명</td></tr>
<tr><td>일반 공동연구원</td><td>명</td></tr>
<tr><td>전임연구인력</td><td>명</td></tr>
<tr><td>연구보조원</td><td>명</td></tr>
<tr><td colspan="2">세부과제(연구팀) 수</td><td colspan="2">총 과제</td></tr>
</table>

☐ **작성요령** (신청서 작성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영역 : 연구소 총괄사항에 대하여 아래 영역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소 실적 및 현황**
- **연구소 중장기 발전 계획**
- **1단계 연구소 성과목표**
- **1단계 총괄 연구개요**

○ 분량 : 총 30매(상기 4가지 영역 전체포함) 이내
○ 형식 :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
○ 규격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참고사항 : 총괄 계획서는 온라인 신청 후 별도의 기관장 확인양식(추후 배포예정)에 동일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연구소 실적 및 현황

Ⅰ. 연구소 설립목적 및 연구실적

1. 연구소 설립 근거, 배경, 연도 및 목적

※ 학칙 또는 연구소 규정에 기술된 내용을 작성

2. 전문화/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가. 소속 대학의 전문화/특성화 방향

※ 기 확정된 내용을 작성

나. 연구소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안에 한하여 작성

3. 연구소 실적(기간 : 2004. 1. 1 ~ 2007. 6. 30)

☞ **연구소 전문화/특성화와 연계된 실적에 한하여 작성**

가. 연구비 확보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 실적 개요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계
건 수	건	건	건	건	건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연구소명으로 계약되어 수행한 연구실적만 기재하십시오.(연구소 소속 교원 개인이 수행한 실적은 제외)

○ 실적 세부내역

(금액단위:천원)

번호	연구기간	연 구 과 제 (지원사업명)	참여 인원수	지원연구비	연구비 지원기관명
1 2 3					

○ 대표 연구성과 및 활용도 기술

(위의 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표 성과 10여개 이내 기술)

나. 학술회의 개최실적

(2004. 1. 1 ~ 2007. 6. 30 사이에 연구소에서 주최/주관한 학술회의 실적)

○ 국내 학술회의(세미나 포함)

번호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자수
1 2 3				

○ 국제 학술회의

번호	개최기간	학 술 회 의 명	개최장소	발표자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2 3						

다. 정기간행물/단행본 발간실적

(2002. 1. 1 - 2007. 6. 30사이에 연구소에서 발간한 실적)

학술지 / 학술서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부	
	부	
	부	
	부	

※ '발행일자'에 정기 발행본은 발행주기 기재

Ⅱ. 연구소 현황

1. 연구인력 현황

※ 연구소 full-time으로 상근하는 연구인력(전임연구인력 등)에 한하여 작성

※ 학위취득 현황, 최근 연구수행실적, 고용조건(형태, 보수 등) 및 기타

2. 연구소 시설(공간) 및 연구장비 등 보유현황

※ 시설은 연구소의 위치, 별도 건물여부 등 상세히 작성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Ⅰ. 연구활동 부문

※ 향후 3단계 9년간(또는 이후 포함)의 연구소 발전계획을 아래 항목에 맞추어 기술

1. 중장기 연구목표

*** 이하 단계별로 구분, 개략적으로 기술하십시오.**

2. 중장기 연구계획 요약

*** 재단 지원과제와 연구소 고유의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기술하십시오.**

- ○ 중점연구소지원과제
- ○ 연구소 자체 추진 연구과제

3. 정책주제와 연구소 연구주제 간의 연계성 및 발전방향

4. 기타사항

Ⅱ. 연구소 운영 부문

※ 향후 9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 기술하되 1단계 3년간의 내용은 연차별로 제시

1. 연구소의 운영 및 발전 계획

- ○ 연구소 소속대학의 전문화 / 특성화 방향
- ○ 연구소의 전문화 / 특성화를 위한 계획
- ○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등을 포함

2. 전임연구인력 확보 및 육성 계획

○ 우수인력 확보 방안 및 대우, 향후 활용 계획

○ 연구소 육성/발전정책과의 연계성 등과 연계하여 기술

3.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 연구소 내 강좌개설(학점인정여부) 또는 대학원 과정 설치 및 운영 계획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 계획

4. 대학측의 지원(대응투자, 인력, 시설 확충) 계획

가. 대학 측의 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원 지원

구 분		단계별 지원계획 (인원)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전임연구교수	인원							
	보수수준							
전임연구원	인원							
	보수수준							
계	인원							
	보수수준							

※ '보수수준'은 연봉을 기준으로 작성

※ 동 사업 선정을 통하여 확보, 임용되는 전임연구인력 외 대학측 인력지원에 한하여 작성

○

나. 연구소 운영인력 지원

구 분		단계별 지원계획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행정지원인력	인원							
	보수수준							
기타 (기술지원인력)	인원							
	보수수준							
계	인원							
	보수수준							

다. 연구소 시설 확보 계획

용 도	현 재	추가확보 계획	계	비 고
연구소 전용공간	㎡	㎡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	㎡	㎡	
총 계	㎡	㎡	㎡	

※ '연구소 전용공간'은 전임연구인력의 연구공간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하십시오
※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은 전임연구인력에게 별도로 확보된 전용공간임(1인당 1.5평 이상)

5. 기타사항

1단계 연구소 성과 목표

Ⅰ. 연구소 현황 및 실적

■ 연구소 사업 목표

1. 교육과 연구의 연계

중점연구소 내에 강좌 및 대학원 학위 과정의 개설 목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목표

기타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목표

2. 연구 성과

과제 수행 중에 달성 가능한 연구성과 목표

(전임연구인력 및 연구소 비전임 연구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①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수 또는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 작품전 입상 등

② 국제특허 등 관련 기타 주요 관련지표

※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 또는 학술저서, 공인된 국제 작품전 등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3. 인력양성 부문

중점연구소 소속의 전임연구인력의 확충 및 양성목표

4. 기타사항

■ 연구소 사업목표

※ 과제 수행 결과 달성할 수 있거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목표들을 제시함
※ 서식이 주어진 경우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표를 기술함

1. 교육과 연구의 연계 부문

(단위: 건수)

항 목	현재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강좌개설(학점인정)					
강좌개설(학점불인정)					
학위과정개설(대학)					
기타 1					
기타 2					
기타 3					
계					

※ '현재'는 연구소지원사업 신청 당시 실시중인 강좌
※ 강좌개설(학점불인정)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 강좌, 교양 강좌 또는 연수 강좌 등을 포함하며 연 6 회 이상의 실시되는 강좌
※ 기타에는 그 외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기술하고 목표치 기재

□ 각 항목의 구체적 운영 계획 기술

○

-

2. 연구 성과

1) 연구소 전임연구인력 연구 성과(과제참여인력에 한함)

항 목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①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				편
②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학술저서 포함)				편
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⑤ 국제특허(등록)				건
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 금액 및 기타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 ①란에는 SCI급 국제학술지/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학술지게재 논문수, 학술저서 및 공인된 국제작품전 입상 건수 만을 기재하되, 이와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연구목표는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2) 연구소 비 전임연구인력(대학교원) 성과(과제참여인력에 한함)

항 목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①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				편
② 전국 규모 학술지 게재 논문 수(학술저서 포함)				편
③ 국제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④ 국내학술대회발표 논문				편
⑤ 국제특허(등록)				건
⑥ 산업체 수주 연구건수/ 금액 및 기타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건 / 천원

3. 인력양성

(단위: 명)

항 목	현재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최종)	계
전임연구인력(재단)					
전임연구인력(대학)					
전임연구인력(기타)					
계					

※ 현재는 연구소지원사업신청 당시 확보된 전임인력 숫자
※ 전임연구인력의 ( )안 표시는 인건비 지급 근거 재원을 의미함 - '기타'는 과기부 등의 정부 타 부처의 인력지원 사업에 의한 숫자

□ 확보 및 활용 방안 기술

○

-

4. 기타 주요 목표

※ 그 외, 주요 목표가 있으면 현재 대비 단계별 목표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해주십시오

항 목	현 재	과 제 수 행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계

1단계 총괄 연구개요

※ 제 1단계 3년간의 연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2매 이내로 작성

Ⅰ. 연구소 총괄 연구개요

1. 연구요약

* 연구소 총괄 연구계획의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2. 세부과제별 구성

* 총괄 주제와 세부과제간 연계성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 과제번호	

2007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정책주제 제( )세부과제 연구계획서

정책주제분야	※ 사교육 정책, 교육재정, 지방교육 중 택 1		
연구규모	1단계 신청연구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참여인원	총 참여인원 (연구보조원 제외)	명
		일반 공동연구원	명
		전임연구인력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작성요령** (신청서 작성시 동 작성요령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 : 세부과제별로 작성
- ○ 분량 :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서 20매 이내(연구업적요약문 제외)
- ○ 형식 : 제시된 항목별로 자유롭게 작성
- ○ 규격 : 휴먼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

Ⅰ. 연구 계획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연구소 총괄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1단계(3년)의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연구주제와 정책주제 간의 연관성

※ 1단계(3년)의 연차별 연구계획을 각각 기술하여 주십시오.

4.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등 기술)

5.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6. 참고문헌

Ⅱ. 연구 수행계획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을 기술)

2. 연구수행일정

(1단계 연차별 과제목표와 추진기간별로 연구수행내용 등을 기술)

< 예시 >

1차 년도 과제 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 2차, 3차 년도 일정도 동일하게 작성

3. 연구진 구성 및 연구원별 연구계획

(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자별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

☞ 향후 연구수행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므로 공동연구원별 실질적인 역할 분담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참여형태 구분		참여자 구분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연구책임자		갑		
공동 연구원	일반 공동	갑		
		을		
		병...		
	연구 전임 인력	갑		
		을		
		병...		

4. 연구비 규모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 등 기술)

5.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학술지

Ⅲ. 대표업적

※ 정책주제 중점연구소의 경우 연구진의 대표업적 제출 의무는 없으나 정책주제 관련 실적이 있을 경우 3개 이내로 작성함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요약문 번호	

※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 구 업 적 요 약 문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제목	
업적 구분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업적 참여형태 (논문작성시 참여형태)	책임 또는 단독( ), 공동( )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요약문 번호 명기 방법 (연구업적별 작성)

예) 연구책임자: 책임-1, 책임-2.

공동연구자: 갑-1, 갑-2 / 을-1, 을-2 / …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